

제8판 2016 서브노트 보시는 분들을 위한 추록

P.15

1. 경찰의 수단 삭제 (TIP은 삭제하지 마세요)

P.17

치외법권 지역 ② 예외 내용변경

② 예외 - **상태책임과 관련하여** 화재나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 갈수 있음.

→ ② 예외 - 화재나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 갈수 있음.

P.17 TIP 삭제

P.20 3. 객관적 윤리질서와 법 삭제

P.21 4. 법률이 객관적 윤리질서를 반영하지 못할 때 경찰의 태도

P.45 복대리 내용 중 표삭제

P.47

지방경찰청 ② 변경

② 서울경찰청장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② 서울경찰청장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P.48 참고 삭제

P.53

적용대상자 ② ㉠ 변경

㉠ **기능직·일반직** 공무원 제외

→ ㉠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외

P.53

2. 경찰공무원의 분류 ② 분류 BOX안 제목변경  
경과와 특기로 분류 → 경과에 의한 분류

P.53

경과, 종류, 특수경과 중 운전경과와 해양경과 삭제

P.53 특기 모두 삭제

P.62 신분상 권리 ③ 쟁송제기권에 추가

③ 쟁송제기권

→ ③ 쟁송제기권 -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나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P.62 참고삭제

P.63 선서의 의무 ① 변경

①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할 의무

→ ①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취임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P.63 직무상 의무 ㉠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내용변경

㉠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 절대적 금지

→ ㉠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P.63 직무상 의무, ㉡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밑에 추가

(a)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p.64 ③ 청렴의 의무 ㉠, ㉡ 변경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직무관련성 필요)

㉡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음(직무관련성 불문).

→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p.64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② 선물신고의무 변경

② 선물신고의무

시가가 미화로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은 소속기관·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은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선물신고의무

공무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p.64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③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변경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P.65 참고 공무원행동강령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

<p>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조)</p>	<p>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p> <p>② ①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p>
<p>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4조의 2)</p>	<p>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p>
<p>이해관계직무의 회피(5조)</p>	<p>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li> <li>2.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3.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4.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li> </ol> <p>② ①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조)</p>	<p>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p>
<p>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조)</p>	<p>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에서 정한</p>

	<p>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li> <li>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li> <li>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li> <li>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li> <li>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li> <li>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li> <li>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li> <li>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li> </ol> <p>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5조)</p>	<p>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p>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조사의 통지 제한(17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P.66 2) 징계의 종류와 내용 강등 ③ 변경

③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

→ ③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P.67 2) 징계의 종류와 내용 정직 ③ 변경

③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

→ ③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P.67 2) 징계의 종류와 내용 감봉 ③ 변경

③ 감봉은 경력평정기간에는 산입함.

→ ③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P.69 민간위원 ㉠ 중앙징계위원회, ㉡ 보통징계위원회 삭제

P.71 소청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 처분 중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함.] 삭제

P.71 제척·기피·회피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

결정의 절차 및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
-------------	--

형식	<p>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p> <p>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p> <p>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p>
----	--

P.72 2. 경찰권의 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일반조항(개괄조항), 2) 개별조항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

1) 일반조항(개괄조항)과 개별조항

- ① 일반조항(개괄조항) - 경찰권의 발동권한을 포괄적 · 추상적으로 수권하는 규정
- ② 개별조항 - 경찰권의 발동권한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수권하는 규정

2) 일반조항(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7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

학설	인정근거
긍정설	<p>① 경찰권의 성질상 입법기관이 미리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모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p> <p>② 일반조항은 개별적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조항이 가능하다.</p> <p>③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발동의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일반조항이 가능하다.</p> <p>④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이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일반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다.</p> <p>⑤ 독일에서는 일반조항을 인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전통이다.</p>
부정설	<p>①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의 법률은 당연히 경찰작용의 근거로서의 개별적인 경찰작용법이어야 하고, 포괄적·일반적 수권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② 헌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p> <p>④ 법률유보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p> <p>⑤ 경찰권의 발동에는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이 필요하다.</p>

P.75 1) 경찰개입청구권 내용중 인정범위, 성립요건, 법적성질 삭제

P.76 2)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삭제

P.76 2. 경찰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 바로 아래 추가

경찰권 행사의 편의주의 원칙상 경찰관청이 현존하는 위험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나 학설과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오직 하나의 결정( )만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바, 이것을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이라고 한다.

P.76 TIP 삭제

P.78 4. 경찰하명의 효과, 1) 의의 삭제

P.86 적용대상자 ② 의무경찰, ㉠,㉡ 삭제

P.87 보호조치 ① 위에 추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91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요건,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

①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③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P.93 마지막 부분에 추가

15. 보상금의 지급(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보상금 지급	<p>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①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p> <p>②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p> <p>③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p> <p>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p> <p>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p> <p>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p>
보상금 심사 위원회	<p>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p> <p>⑤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li> <li>2. 보상금 지급 금액</li> <li>3. 보상금 환수 여부</li> <li>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li> </ol> <p>⑥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보상금 지급	<p>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p>

<p>▶ <b>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b></p> <p>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p>
--

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P.94 제1절 총설 삭제

P.95 분업의 원리 ③ 변경

③ 경과와 **특기로** 구분하여 보직관리하는 원리

→ ③ 경과로 구분하여 보직관리하는 원리

P.99 관서운영경비 삭제

P.99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삭제

P.100 1) 품목별 예산제도 개요 ③ 가장 오래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산제도, 장점 ③ 관리자의 회계기술이 필요 삭제

P.102 2) 무기관리의 내용을 아래의 것으로 대체

① 무기고의 종류

간이무기고	①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 ②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등과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집중무기고	①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의하여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 ② 간이무기고 설치장소 이외의 경찰기관에 설치한다.

② 무기 · 탄약고의 열쇠관리

무기고 · 탄약고의 열쇠관리	① 집중무기고 - 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경찰서는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담당)관 ②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 - 지역경찰관리자(지구대장, 파출소장, 순찰팀장)
무기고 · 탄약고의 설치	①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P.102 1. 보안의 개념 1)의의 삭제

P.104 4) 보안의 대상, 문서보안, ③ 음어 및 암호자재의 제작 삭제

P.104 4) 보안의 대상, 시설 및 지역보안 TIP삭제

P.105 3.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 Ⅲ급 내용 교체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 취급권자

→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 취급권자

P.105 Ⅱ급 ①의 내용 변경

① 특수경과 중 운전경과를 제외한 해경·통신·항공경과 근무자는 보직 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권자가 됨

» 특수경과는 경과 자체가 전문특기이고, 운전경과를 제외한 특수경과 근무자는 Ⅱ급 비밀취급권자이다.

→ ① 특수경과 근무자는 보직 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권자가 됨

P.106 1. 행정책임과 경찰통제

P.108 4. 경찰감찰규칙 BOX안의 결격사유를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

신분보장	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밝혀진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를 할 수 없다. ②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관할구역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특별감찰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

	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교류감찰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P.110 4. 정보공개와 정보제공의 비교 삭제

P.114 2) 법제정 및 법집행상의 범죄개념 삭제

P.114 3) 범죄발생의 요소 BOX안 소질과 환경, Luxemburger 삭제

P.115 2. 범죄의 원인과 통제방법 부터 P.119 2. 생활안전경찰 전까지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

2. 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고전주의 범죄학	①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으로 전제(의사비결정론) ② 효과적 범죄통제를 위한 엄격하고 분명하며 신속한 형벌 주장 ③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
실증주의 범죄학	① 인간의 행위는 생물적·심리학적·사회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② 범죄는 자유의지가 아닌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③ 기존의 형벌과 제도로는 범죄통제가 불가능하다.

2)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사회구조원인	사회해체론, 문화적 전파이론,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문화갈등이론	
사회과정원인	사회학습이론	문화적(차별적)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차별적 강화이론, 중화기술이론
	사회통제이론	견제이론, 동조성 전념이론, 사회적 유대이론
	낙인이론	

3. 범죄예방

1) 범죄통제의 시대별 변천과정

고대	고전주의	실증주의	범죄사회학자	상황적 범죄예방
응보와 복수	형벌과 제재	교정과 치료	범죄 예방	
	억제이론	치료 및 갱생이론	사회발전이론	상황적 예방이론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범죄 기회의 제거
	의사비결정론	의사결정론	범죄는 사회적 책임	미시적 분석 방법

2) 범죄예방이론

억제이론	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비결정론적 인간관) ② 범죄는 개인의 책임일 뿐 사회의 책임이 될 수 없다. ③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주장한다.
------	---

	④ 총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치료 및 갱생이론	①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특별예방효과를 강조하였다. ② 범죄는 사회의 책임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처벌이 아닌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③ 치료.갱생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극적 일반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	①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을 범죄자의 내재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본다. ②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발전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한다. ③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체는 수행할 수 없음).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미시적 분석을 통한 범죄기회의 제거를 주장한다. ②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국가통제사회 및 전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	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다(비결정론적 인간관) ②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유리한 경우 범죄를 결행한다. ③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일상활동 이론	① 모든 개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 ② 범죄자적 속성을 범죄의 결정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 ③ 미시적 분석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범죄를 예방한다. ④ 범죄발생의 3요소 - 범죄자, 범행대상, 보호자의 부재 ※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결정하는데 고려가 되는 요소 (VIVA모델) -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
	범죄패턴 이론	①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 ② 범죄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을 분석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지역의 예측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연쇄범죄 해결에 도움을 준다.
환경범죄 이론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도시건설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이론이다.	
집합효율성 이론	집합효율성은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응집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특정 안전, 예를 들면 범죄예방 및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깨진유리창 이론	무질서한 행위와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은 공공장소를 회피하게 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무질서와 약화된 사회통제는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본다.	

P.119 참고 생활안전경찰과 전담경찰의 비교 삭제

P.125 8. 경찰방문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

8. 경찰방문 · 방법진단

경찰방문	‘경찰방문’이란 경찰관이 관할구역 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등을 행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법진단을 하는 등 예방경찰활동을 말한다.
방법진단	‘방법진단’이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상가·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법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법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말한다.

P.126 9. 방법진단 1) 방법진단의 의의, 2) 방법진단의 실시 방법 삭제

P.131 4. 청소년보호규정 BOX안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 유해매체물 광고제한 시간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P.131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BOX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P.135 2. 경범죄처벌법 BOX안 범칙금의 납부 ① 통고처분서 작성기준일 삭제

P.135 1. 즉결심판의 의의 BOX안 의의 ① 유래 삭제

P.136 1. 즉결심판의 의의 BOX안 개정 ④, ⑤, ⑥, ⑦ 삭제

P.138 2) 정보시스템 BOX안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제외 대상 삭제

P.138 3)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등록한 자료 BOX안 공개자료의 삭제 삭제

P.139 4)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배 BOX안 해제사유 삭제

P.143 마. 응급조치(동법 제5조)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

마. 응급조치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단, 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함)
------	--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에의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기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P.143 바. 임시조치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

바. 임시조치

임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P.147 ㉡ 마약의 구분 삭제

P.151 2. 경비경찰의 중요성과 곤란성 삭제

P.154 행사안전경비(혼합경비)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P.154 1. 행사안전경비의 개념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

의의	①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경계하고, 사전에 필요한 부대배치와 예비경력을 확보하여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경비 경찰활동이다. ②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이 행사안전경비의 대상에 해당된다. ③ 행사안전경비와 다중범죄진압 경비는 군중의 조직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
법적근거	① 경찰법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행사안전경비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P.155 1. 선거경비의 방침 BOX안 투표소 경비 삭제

P.156 1. 선거경비의 방침 BOX안 비상 근무 체제 내용변경

- ① 경계강화기간 -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2일 전까지
- ② 선거일 2일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 선거당시의 치안 여건을 감안하여 비상구분 하나,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갑호비상이 일반적이다.  
 → ① 경계강화기간 - 선거운동 개시 전일부터 선거전일까지
- ②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 갑호비상이 일반적이다.

P.156 1. 선거경비의 방침 BOX안 후보자 신변보호 지자체 및 국회의원 내용추가

-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음.

P.157 BOX안 재난관리단계의 내용에 추가

- ① 관심단계 - 일부 지역의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 ② 주의단계 - 전국적 기상특보의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 ③ 경계단계 - 전국적 기상특보의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④ 심각단계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P.162 1. 서설 ④ 경호경비시 부서별 업무 삭제

P.163 5. 안전대책 삭제

P.165 3. 비상업무규칙 ① 경찰비상업무규칙상 용어정리에 추가

가용경력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
------	--

P.169 2. 교통4E의 원칙 삭제

P.172 BOX안 어린이 통학버스 ㉓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내용중 ㉔, ㉕ 삭제

P.172 BOX안 어린이 통학버스 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㉗ 삭제

P.172 BOX안 어린이 통학버스 ㉕ 삭제

P.173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

보행자의 통행방법	㉑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진행되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 하여야 함. ㉒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 ㉓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소아용자전거 -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고 보행자에 해당 ㉔ 보행자 ㉗ 횡단보도에 누워서 자는 자(보행자 ×) ㉕ 손수레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해당하나, 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자는 보행자가 아님.
차마의 통행방법	㉑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우측통행의 원칙). ㉒ 자전거의 통행방법 ㉗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음. ㉕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병진금지). ㉔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 ㉖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 음주운전은 금지이나 처벌규정이 없음

P.179 2. 교통정리의 원칙 삭제

P.182 1) 면허종별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 BOX안의 트레일러, 레커를 모두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로 변경

P.182 1) 면허종별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 BOX안의 특수면허를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㉑ 견인형 특수자동차 ㉒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㉑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㉒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㉑ 구난형 특수자동차 ㉒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P.183 3)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㉔ 변경

④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④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P.184 4) 면허발급 제한기간 BOX안 기타 위에 추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각각 무효로 처리한다. ② ①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	---

P.184 5)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 위에 추가

5) 운전면허증의 반납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반납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P.186 1) 처분별점 ③, ④, ⑤ 삭제

P.191 3.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 삭제

P.192 2) 정보의 효용성 삭제

P.198 3) 첩보의 평가 삭제

P.199 5. 정보의 배포 BOX아래 추가

2) 정보배포의 수단

비공식적 방법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브리핑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메모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일일정보 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특별보고서	누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사용한다.
전화(전신)	신속을 요하는 경우 1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며 보안유지가 특히 요구되는 방법이다.
휴대폰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

문자메세지	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 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때로는 일시에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	--

### 3) 정보보고서의 종류

견문보고서	경찰관이 오관의 작용을 통해 근무 및 일상생활 중 지득한 제 견문을 신속.정확하게 수집.보고하는 보고서
특별보고서	국내 치안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킬 사항, 중요시책 자료에 제공할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정보판단서	타 견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는 보고서

P.199 6. 정보보고서 삭제

P.200 2. 신원조사 BOX안 개요 ③, ④ 삭제

P.200 2. 신원조사 BOX안 담당부서, 신원조사권자 삭제

P.204 4.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BOX안 재결에 추가

②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P.207 제2절 공산주의의 이념 삭제

P.213 4. 유언비어 · 모략 · 불온선전물 삭제

P.216 BOX안 특수직무유기죄 밑에 추가

무고·날조죄 (12조)	① 일반 무고·날조죄의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의 주체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이다. ③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

P.217 1. 보안관찰 해당범죄 BOX안 균형법의 내용 중 단순반란불고지죄를 단순반란불보고죄로 변경

P.218 5.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 BOX안 절차에 내용 추가

③ 검사는 집행중지결정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P.223 BOX안 여행증명서 ③ 삭제

P.224 3. C.I.Q 과정 삭제

P.225 BOX안 외국인의 출국정지의 내용중 출국금지라고 되어있는 것을 모두 출국정지로 변경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인 올림